



제 4 2 8 회 국 회 (임 시 회)
제 2 차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체 육 시 설 의 설 치 · 이 용 에 관 한 법 률 일 부 개 정 법 률 안

검 토 보 고

< 체 육 시 설 의 안 전 시 설 · 설 비 · 장 치 설 치 의 무 >

■ 고 동 진 의 원 대 표 발 의 (의 안 번 호 제 2209066 호)

2025.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용 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체육시설의 안전 시설 · 설비 · 장치 설치 의무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고동진의원 등 14인
2. 발 의 일: 2025. 3. 19.
3. 회 부 일: 2025. 3.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풋살장에서 무게추 등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골대가 넘어져 어린아이들의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풋살장 등의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 균열 등 지엽적 및 형식적인 안전점검’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안전 시설·설비·장치의 설치에 대한 규정’은 부재하여, 각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입법적 불비’가 존재하고 있음.

이에 국민들이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체육시설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소관하는 체육시설의 안전 시설·설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의9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체육시설의 안전 시설·설비·장치 설치 의무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국가·지자체·체육시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체육시설의 안전 시설·설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9 신설, 안 제40조제1항제2호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법률 제20499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u><신설></u>	<u>제4조의9(체육시설의 안전 시설·설비·장치의 설치)</u>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체육시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체육시설의 안전 시설·설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법률 제20499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0조(과태료) ① ----- ----- -----. 1. (현행과 같음) 2. <u>제4조의9에 따라 체육시설의 안전 시설·설비·장치를 설치하지 아</u>

2. ~ 7. (생략)	니한 체육시설업자
② (생략)	3. ~ 8. (현행 제2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다. 검토의견

- 현행법상 신고·등록체육시설업자는 시설 기준(제11조), 안전·위생 기준(제24조)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¹⁾,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제30조),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제32조 제2항제6호), 영업정지명령 위반에 따른 처벌(제38조제2항제3호) 등의 제재 대상임.

-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시설 기준 등)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안전·위생 기준 등) ①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임무, 수질 관리,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및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제1항의 안전·위생 기준에 따른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제2항의 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 이용을 거절하거나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유형	주요 내용
시설 기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 공통 시설 기준 -필수시설(편의, 안전, 관리시설)과 임의시설(편의, 운동시설)을 규정 -필수시설: △편의시설(주자장, 탈의실, 급수시설), △안전시설(조도, 응급실 및 구급약품, 환기 시설, 어린이통학버스, 1.2m 안전난간), △관리시설(매표, 사무, 휴게실 등) -임의시설: △편의시설(관람석, 용품판매·수선점, 식당·목욕시설·매점 등 편의시설) 등 ○ 그 외 종목별 시설 기준
안전·위생 기준 (「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6])	○ 이용질서, 이용제한, 정원, 피난방법 등, 사망사고시 보고, 매뉴얼 작성 및 교육, 안전수칙, 부착물 등의 고정 등의 공통기준과 종목별 기준(안전관리요원, 안전장비 구비, 대여, 청소 등을 규정)

- 그런데 최근 세종시 공공풋살장 골대 전복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 사고²⁾ 등을 계기로, 풋살장 등 자유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안전점검 관련 규정만 있을 뿐, 사전에 안전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시설 이용자 보호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체육시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체육시설의 안전 시설·설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체육시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체육시설의 안전 시설·설비·장치 설치 의무를 부과하려는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첫째, 의무대상(안 제4조의9)과 관련하여, 제안이유에서 제시하고 있는 ‘풋살장’의 경우³⁾,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체육교습업’의 경우에만 신고대상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유업으로 현행법상 ‘체육시설’에는 해당하나 등록·신고 대상인 ‘체육시설업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바⁴⁾, 개정안에

2) 2025.3.13. 세종시 초등학교생이 공공풋살장 골대에 매달리다 골대가 전복돼 사망한 사고

[참고자료3] 세종시 공공풋살장 사고 이후 조치

3) 공공체육시설 풋살장 557개소, ‘풋살’ 체육교습업 108개소, ‘풋살+축구’ 체육교습업 168개소

[참고자료4] 풋살장 설치·운영 현황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신고 체육시설업 : 체육교습업 (이하 생략)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체육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따를 경우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음.

- 둘째, 과태료 규정(안 제40조제1항제2호)과 관련하여, 개정안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에 대해서는 현행법 제11조(시설 기준)·제24조(안전·위생 기준) 및 관련 제재 규정과 하위 법령을 통해서도 안전 시설·설비·장치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영업정지명령 또는 처벌로 통제할 수 있는바, 중복 입법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체육시설업자의 안전·시설 기준 위반 제재 규정]

처벌수준	위반사항	기타 제재수단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u>영업정지명령 등</u> 후 영업 ○ 안전·위생기준 위반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안전점검 후 시설물 보수·보강조치 미이행	* <u>영업정지명령 등</u>
	○ 소규모체육시설- <u>영업정지명령 등</u> 후 영업	-
-	○ 시설기준 위반 ○ 안전·위생기준 위반	* <u>시정명령</u> → <u>영업정지명령 등</u>

- 이에, 본 법률을 개정하기보다는 동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을 통해 공공풋살장 및 체육교습업(풋살장 포함) 등에 대한 안전 관리

운동 종목	축구장, 풋살장 등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제6조 관련)

업종	영업의 범위
10. 체육교습업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동에 대하여 <u>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u> 아. 축구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⁵⁾⁶⁾.

문 의 처
02)6788-5375

5) 이와 관련하여, 문체부는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법에 따른 시설, 안전·위생 기준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특히 제재규정의 경우 현행법(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벌칙)에서 더 강도 높게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행법 시행규칙, 「체육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등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임

6) < 관련 단체 의견 >

- 한국대중골프장협회: 개정안 내용은 현행법에 이미 규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바, 현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보완으로 대신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골프장경영협회: 골프장업은 인·허가 절차부터 안전시설·설비·장치 등을 구비하여야 하는바, 개정안은 중복규제의 측면이 있음

[참고자료1] 체육시설업 현황 (자료: 문체부)

□ 등록·신고 체육시설업(민간체육시설) : 67,205개소

계 (단위: 개소)	등록체육시설업				신고체육시설업*
	소계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업	
67,205	549	530	14	5	66,656

□ 신고체육시설업(민간체육시설) : 총 66,656개소

구분	업소수 (개소)	비율 (%)	구분	업소수 (개소)	비율 (%)
계	66,656	100.0	종합체육시설업	299	0.45
체육도장*	16,126	24.19	인공암벽장업	328	0.49
당구장	15,477	23.22	승마장업	122	0.18
체력단련장	14,976	22.47	썰매장업	115	0.17
골프연습장	8,573	12.86	무도장업	65	0.10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골프,야구)	6,201	9.30	빙상장업	49	0.07
체육교습업**	2,874	4.31	야구장업	38	0.06
수영장업	891	1.34	요트장업	17	0.03
무도학원업	500	0.75	카누장업	5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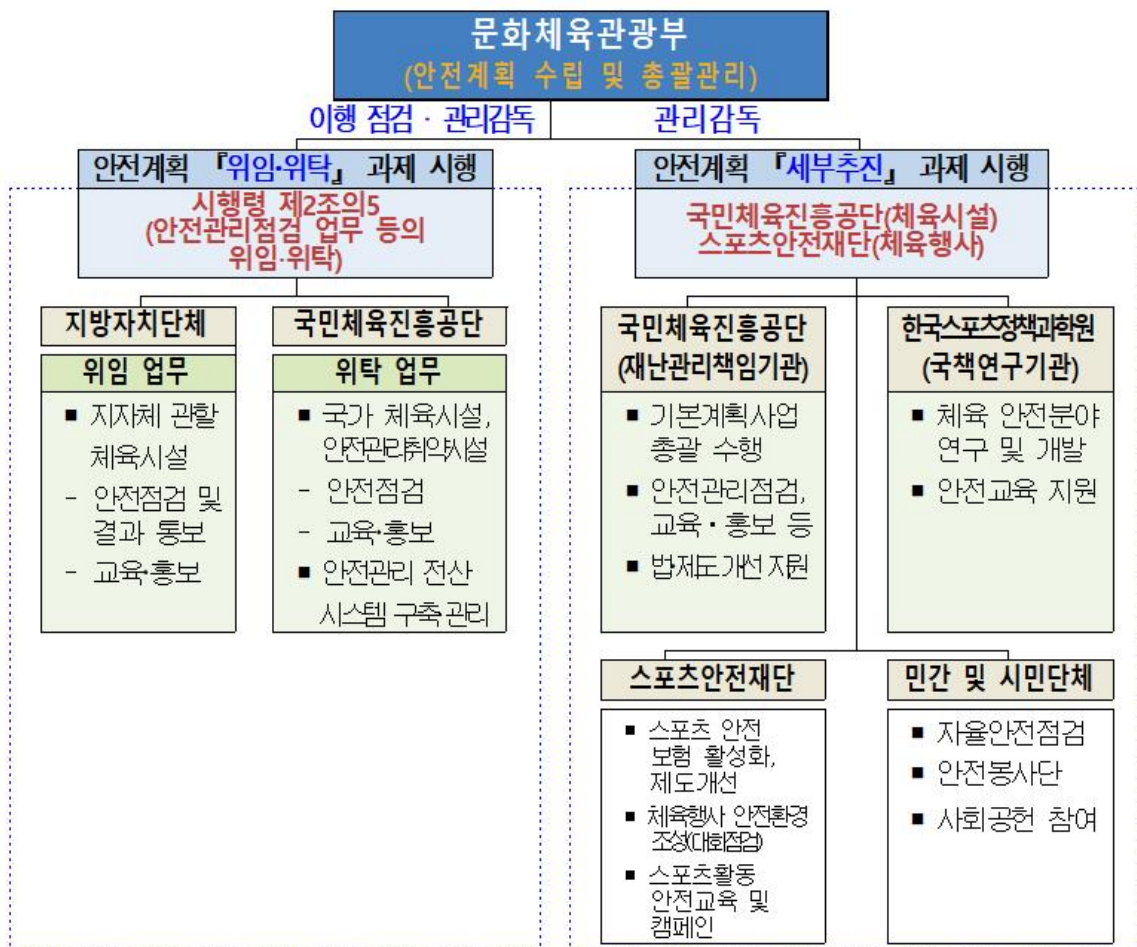
* 체육도장 :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

** 체육교습업 : 농구, 롤러스케이트, 배드민턴, 빙상, 수영, 야구, 줄넘기, 축구
(13세 미만 어린이 대상 30일 이상 교습행위 제공업)

[참고자료2] 체육시설 안전점검 현황 (자료: 문체부)

□ 체육시설 안전점검

- 근거규정 : 「체육시설법」 제4조의2~제4조의8,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제2조의6,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문체부고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매뉴얼」(문체부),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문체부), 「스포츠행사 안전점검 매뉴얼」(문체부) 등
- 점검시기: 반기별 시행
- 점검주체
 - 지자체: 소관 전국 민간(등록/신고업)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 국민체육진흥공단: 국가체육시설(107개), 안전취약 공공체육시설(350개)
- 점검체계



○ 점검분야: 시설물 분야, 소방시설 분야, 체육시설법 관련 규정 준수 여부

구 분	체육시설 안전점검	타 법령상 점검여부
시설물	육안 및 점검 장비를 활용한 체육시설 내·외부 전반적 상태확인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점검 등
소방시설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작동상태 등	소방법에 따른 점검 등
체육시설법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및 안전·위생기준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준수 여부 등	-

- 소관 지자체에서는 해당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SFMS)*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음.

※ 체육시설 담당자(공공 및 민간체육시설업자 등)에 대한 점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체육시설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 교육내용 : 체육시설법령 준수사항, 체육시설 안전점검 방법, 체육시설 안전사고 법적분쟁 및 해결방안 등
- 교육대상 : 공공·민간체육시설 안전관리 담당자, 종사자 등(11만여명)

구 분	과 정	교육 내용
공공	6개 과목, (총 6시간)	·체육시설법 I, 체육시설법II, 법적분쟁 및 해결방안, 안전점검 I, 안전점검II, SFMS(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민간	5개 과목 (총 5시간)	·체육시설법 I, 체육시설법II, 법적분쟁 및 해결방안, 안전점검 I, 안전점검II

[참고자료4] 세종시 공공풋살장 사고 이후 조치 (자료: 문체부)

□ 사고 이후 조치 현황

- 해당 사고(25.3.13.) 발생 이후, 문체부는 유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 대하여 ‘체육시설 안전관리 철저 요청 공문’을 시행(3.21.)

「‘25년 봄철 대비 체육시설 안전관리 철저 요청 및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 의견조회」

- 봄철 체육활동이 활성화 및 체육시설 이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각 지자체 및 관련 기관에서는 각종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소관 시설 안전관리 철저
- 체육시설 안전점검 시, 관련 법령 및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등이 준수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 체육시설안전관리 표준매뉴얼 및 안전점검표 · 등급판정 매뉴얼

- 또한, 풋살장 안전 규정 및 안전점검 매뉴얼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관련기관 간담회*를 개최(3.25.)하였고, 추가로 지자체·관련기관 대상으로 안전점검 관련 의견을 조회(~4.4)하여 안전관리 매뉴얼 등을 개정하고, 대국민 안전 홍보 콘텐츠 제작·배포를 통하여 안전관리 개선 예정

* (참석) 문체부, 체육공단, 한국풋살연맹, 심판위원, 풋살장 운영자

* (의견) 골대고정화 이외 골대 전복 방지 추가 등의 관리방안 개정 필요 및 전복 방지를 위한 와이어 설치, 프로텍트 설치 등 의견 수렴

[참고자료4] 풋살장 설치·운영 현황 (자료: 문체부)

□ 풋살장 현황

○ 공공체육시설 중 ‘풋살장’ 개소수 557개소

(단위: 개소)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28	6	9	7	4	5	24	12	68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	총계
162	70	64	27	24	21	20	6	557개소

(2024 전국 공공체육시설현황 현황)

□ 체육교습업(풋살) 현황

○ 체육교습업 중 ‘풋살’로 신고된 사업장 수는 108개소

(단위: 개소)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32	14	1	9	2	1	1	-	1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	총계
15	3	7	1	19	-	-	2	108개소

○ 체육교습업 중 ‘축구+풋살’로 신고된 사업장 수는 168개소

(단위: 개소)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u>6</u>	6	20	18	1	5	-	-	7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	총계
43	42	3	-	-	4	12	1	168개소

(2024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